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7 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 권칠승·송옥주·민병덕

서영교 · 김종민 · 문금주

임호선 · 이병진 · 김용만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징역·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(無期)를 규정하고 있으나,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(行狀)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.

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·개선의 가능성 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 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2조 및 제73조의2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중 "징역이나 금고"를 "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"로, "양호하여"를 "양호하며"로, "무기형은 20년, 유기형은 형기"를 "형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과 제2항"으로 한다.

- ②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.
- 1. 30년을 복역한 경우
- 2.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
- 3.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제7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假釋放된 者"를 "유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의

사망시까지로 한다. 또한,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,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무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가석방의 요건) ① <u>징역이</u>	제72조(가석방의 요건) ① <u>유기징</u>
<u>나 금고</u> 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	역이나 유기금고
이 행상(行狀)이 <u>양호하여</u> 뉘우	<u>양호하며</u>
침이 뚜렷한 때에는 <u>무기형은 2</u>	<u>형기</u>
<u>0년, 유기형은 형기</u> 의 3분의 1	
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	
방을 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②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집
	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
	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
	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
	<u>할 수 있다.</u>
	<u>1. 30년을 복역한 경우</u>
	2.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
	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
	책임이 없는 경우
	3.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
	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
	<u>경우</u>
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	③ 제1항과 제2항
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	
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.	
第73條의2(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	第73條의2(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
觀察) ①假釋放의 기간은 無期	觀察) ① 假釋放의 기간은 無期

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,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,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중 保護觀察을 받는다. 다만, 假釋 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刑에	있어서	네는 기	<u> </u>	의 첫] 분을
받은	자의	사망	시까기	이로	한다.
<u>또한,</u>	有期	刑에	있어	서는	남은
刑期.	로 하5	티, 그	기간	은 1	0年을
<u> 초과</u>	할 수	없다.			
② <u>유</u>	기형을	받고	! 가스	방돈	<u> </u>

----**.**

③ 무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「전자장 지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 조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